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667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3

I. 제안경위

2025년 7월 23일 서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29조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유입 차단조치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29조제1항제2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u>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있다.
1. (생략)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 유입 <u>차단조치</u>	-----
3. ~ 7. (생략)	-----.
② · 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 <u>차단조치 또는 해양폐기물</u>
	<u>의 수거</u>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1조¹⁾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떠밀려 온 폐기물이 해상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상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상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양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해양폐기물의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그 중 매년 장마철이나 태풍 발생 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내륙지역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된 해양폐기물의 처리를 해안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역 간 갈등 발생의 소지가 있고, 매년 유입되는 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유입 차단조치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제11조제3항에서 해양폐기물 수거 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비용지원 근거를 규정하면서,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제11조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11조제3항 신설	제29조제1항제2호 개정
제11조 ③ 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u>차단조치 또는 해양폐기물의 수거</u>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해양폐기물의 특성 고려 시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범위를 현실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8